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4331

제안연월일: 2024. 9.

제 안 자: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 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093호)	임이자	2024. 6. 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 회의(2024. 9. 9.)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 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655호)	진성준	2024. 6. 19.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 회의(2024. 9. 9.)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 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4. 9. 1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4. 9. 12.)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운영을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문·기관별 로 각각 별도로 생산하여 제공 중인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 류체계를 마련하며 이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정 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 환경부장 관의 업무지원 및 자료제출요청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전략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실효적인 업무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문·기관별로 각각 별도로 생산하여 제공 중인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연계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1호의2 및 제37조).

- 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및 자료제출요청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6항).
- 다.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 변경 시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 럼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 라.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 관련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협조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제5항).

법률 제 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기후위기 적응정보"란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 치는 영향,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 가한 자료와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추진하는 과정에서 수 집·활용되는 모든 자료 및 분석 결과물 등을 말한다.

제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 여야 한다.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③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제11조제2항·제3항을"을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제11조제3항"을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기후위기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 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를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제2항 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 보통합플랫폼"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 른 기상정보관리체계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 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수집 ·생산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이 이를 손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 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2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1의2. "기후위기 적응정보"란</u>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
	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
	·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
	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ㆍ경
	제적 파급효과를 조사 · 평가
	한 자료와 기후위기 적응 정
	<u>책을 마련·추진하는 과정에</u>
	서 수집・활용되는 모든 자
	료 및 분석 결과물 등을 말
	<u>한다.</u>
12. ~ 17. (생 략)	12. ~ 17. (현행과 같음)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⑥ 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
	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

⑥ 제2항부터 <u>제5항</u>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전략의 내용 및 수립·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생략)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후단 신

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
<u>야 한다.</u>
<u> ⑦</u> <u>체6항</u>
1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
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5</u>
원활한 업무수행
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

설>

⑤ 제1항부터 <u>제3항</u>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 ㅈ · ② (생 략) <신 설>

<u>③</u> ~ <u>⑤</u>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도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제출·보고,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저

- ① (생 략)
- ② 시·군·구계획을 수립·변경하 ②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
	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u>⑥</u> <u>제4항</u>
세	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u>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u>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④</u> ~ <u>⑥</u>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u> ⑦</u> <u>제6항</u>
줴	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3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 지사"는 각각 "시장·군수·구청 장"으로 본다.

- ③ ~ ⑤ (생 략)
-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 🗷 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③ (생 략)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 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 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 항·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 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저 ① (생략)
 - ② 정부는 기후위기가 생태계, ② -----기후위기 적응정보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 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는 기 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 축·운영하여야 한다.

		<u>제11</u> 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3	~	(5)	(현	행괴	- ~	낱음)			
세	22조	.(20)50	지방	·탄/	소중	급	두신	백성	
	장위	원:	회의	구기	र्नु ।	및	운영	3	등)	
	1	\sim	3	(현	행괴	- 같	날음)			
	4									
					- <u>제</u>	113	조제.	4호	<u>}</u>	
줴	37조	.(フ]	후우	기의	김	시	·예 <i>칕</i>	<u>z</u>	등)	

- - ① (현행과 같음)
- 를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 활 용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를 구축 · 운영하여야 하다.

<신 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상 정보관리체계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 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 <u>기적응정보관리체계</u>의 구축·운 영, 제3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후 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하 여 수집 · 생산된 기후위기 적 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 산업계 · 연구계 · 학계 등이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④ ------<u>제1항에 따른 기상</u> 정보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 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 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 통합플랫폼-----

⑤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 체계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위 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 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 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 폼-----제4항-----